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심사결과 공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결과 및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공개

■ 공개일 / 공개방법

- 2023. 2. 3.(목),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게시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심시결과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등 취업심사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퇴직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급	퇴직시기	기관 (직위)	일자		
경상북도 농촌활력과	지방 기술서기관	2022. 12월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사무소	2022. 2월	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지방 시설사무관	2022. 12월	(주)삼한씨원	2022. 2월	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포항시의회	의원	2022. 4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2022. 2월	취업 불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 분	주 요 내 용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